

201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평창군수

2017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8. 3. 30. ~ 4. 18.(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박찬원(총괄)
- 검사위원 : 이영목(일반회계 세입결산)
- 검사위원 : 신창식(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사위원 : 조상현(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금고)
- 검사위원 : 신종해(공유재산, 물품관리, 채권·채무, 기금, 성과보고서)

평창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창군수 귀하

2018년 4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청으로부터 평창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 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박찬원



검사위원 이영목



검사위원 신창식



검사위원 조상현



검사위원 신종해



목 차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입결산	4
2) 세출결산	5
2. 일반회계	
1) 세입결산	6
2) 세출결산	6
3. 특별회계	
1) 세입결산	7
2) 세출결산	8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9
2) 채권	9
3) 채무	10
4) 공유재산	10
5) 물품	11
5. 세입·세출외현금	11
6. 검사결과	12
7.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13

2017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2017년도의 평창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결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당해연도	632,013,010,238	655,347,144,807	649,930,776,418	1,034,538,580	4,381,829,809
전 년 도	545,049,286,258	560,783,094,581	554,427,985,120	1,532,087,892	4,823,021,569
증 감	86,963,723,980	94,564,050,226	95,502,791,298	△497,549,312	△441,191,760

- 실제수납액은 649,930,776,418원으로 예산현액의 102.84%이고
징수결정액은 655,347,144,807원으로 예산현액의 103.6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2%로 나타남.

※ 2016년도

- 실제수납액 : 554,427,985,120원(예산현액의 101.72%)
- 징수결정액 : 560,783,094,581원(예산현액의 102.89%)

2) 세출결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당해연도	515,443,165,000	116,569,845,238	632,013,010,238
전 년 도	453,647,134,000	91,402,152,258	545,049,286,258
증 감	61,796,031,000	25,167,692,980	86,963,723,980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538,292,421,443	505,386,556,303	106,302,931,478	20,323,522,457
446,594,663,341	414,193,714,581	116,569,845,238	14,285,726,439
91,697,758,102	91,192,841,722	△10,266,913,760	6,037,796,018

- 2017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3.62% 증가한 515,443,165,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2,013,010,239원 임.
- 지출액은 505,386,556,303원으로 예산현액의 79.96%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비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632,013,010,238	106,302,931,478	48,049,728,068	6,427,549,790	51,825,653,620	16.82%
전 년 도	545,049,286,258	116,569,845,238 (4,890,000,000)	55,052,350,288 (4,240,000,000)	5,862,746,360	55,654,748,590 (650,000,000)	21.39%
증 감	86,963,723,980	△10,266,913,760	△7,002,622,220	564,803,430	△3,829,094,970	△4.57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당해연도	558,297,647,748	575,469,354,427	570,471,629,268	1,034,538,580	3,963,186,579
전 년 도	454,273,614,028	467,943,654,076	462,293,448,766	1,295,214,980	4,354,990,330
증 감	104,024,033,720	107,525,700,351	108,178,180,502	△260,676,400	△391,803,751

- 실제수납액은 570,471,629,268원으로 예산현액의 102.18%이고, 징수결정액은 575,469,354,427원으로 예산현액의 103.0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13%임.

※ 2016년도

- 실제수납액 : 462,293,448,766원 (예산현액의 101.77%)
- 징수결정액 : 467,943,654,076원 (예산현액의 103.01%)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당해연도	471,061,440,000	87,236,207,748	558,297,647,748
전 년 도	389,274,274,000	64,999,340,028	454,273,614,028
증 감	81,787,166,000	22,236,867,720	104,024,033,720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478,082,971,314	448,827,675,134	94,355,816,828	15,114,155,786
380,002,755,667	354,337,211,637	87,236,207,748	12,700,194,643
98,080,215,647	94,490,463,497	7,119,609,080	2,413,961,143

- 2017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21.01% 증가한 471,061,440,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8,297,647,748원 임.
- 지출액은 448,827,675,134원으로 예산현액의 80.39%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비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558,297,647,748	94,355,816,828	45,721,319,988	5,462,575,590	43,171,921,250	16.90
전 년 도	454,273,614,028	87,236,207,748 (4,590,000,000)	49,650,015,178 (4,240,000,000)	5,554,755,190	32,031,437,380 (350,000,000)	19.20
증 감	104,024,033,720	7,119,609,080	3,928,695,190	92,179,600	11,140,483,870	△2.30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3.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당해연도	73,715,362,490	79,877,790,380	79,459,147,150	0	418,643,230
전 년 도	90,775,672,230	92,839,440,505	92,134,536,354	236,872,912	468,031,239
증 감	△17,060,309,740	△12,961,650,125	△12,675,389,204	△236,872,912	△49,388,009

- 실제수납액은 79,459,147,150원으로 예산현액의 107.79%이고, 징수결정액은 79,877,790,380원으로 예산현액의 108.3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9.48%임.

※ 2016년도

- 실제수납액 : 92,134,536,354원 (예산현액의 101.50%)
- 징수결정액 : 92,839,440,505원 (예산현액의 102.27%)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당해연도	44,381,725,000	29,333,637,490	73,715,362,490
전 년 도	64,372,860,000	26,402,812,230	90,775,672,230
증 감	△19,991,135,000	2,930,825,260	△17,060,309,740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60,209,450,129	56,558,881,169	11,947,114,650	5,209,366,671
66,591,907,674	59,856,502,944	29,333,637,490	1,585,531,796
△6,382,457,545	△3,297,621,775	△17,386,522,840	3,623,834,875

○ 2017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31.06% 감소한 44,381,725,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715,362,490원 임.

○ 지출액은 56,558,881,169원으로 예산현액의 76.73%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원)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비율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73,715,362,490	11,947,114,650	2,328,408,080	964,974,200	8,653,732,370	16.21
전 년 도	90,775,672,230	29,333,637,490 (300,000,000)	5,402,335,110	307,991,170	23,623,311,210 (300,000,000)	32.31
증 감	△17,060,309,740	△17,386,522,840	△3,073,927,030	656,983,030	△14,969,578,840	△16.10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결산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19,794,080,230	1,424,861,465	2,562,486,295	1,137,624,830	21,218,941,695
통합관리기금	8,149,442,907	△9,110,615	104,897,535	114,008,150	8,140,332,292
사회복지기금	6,425,027,801	736,798,807	820,098,807	83,300,000	7,161,826,608
체육진흥기금	3,833,257,680	633,488,833	655,488,833	22,000,000	4,466,746,513
식품진흥기금	116,110,811	△844,327	43,889,343	44,733,670	115,266,484
재난관리기금	1,259,457,911	△456,218,750	417,364,260	873,583,010	803,239,161
옥외광고정비기금	10,783,120	20,714,647	20,714,647	0	31,497,767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500,032,870	500,032,870		500,032,870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서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19,794,080,230원 보다 1,424,861,465원이
증가한 21,218,941,695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결산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4,699,764,591	98,370,366	567,319,220	4,230,815,737
일반회계	3,855,165,360	36,366,080	329,240,050	3,562,291,390
특별회계	38,948,490	0	6,602,290	32,346,200
기금	805,650,741	62,004,286	231,476,880	636,178,147

- 보유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699,764,591원에서 98,370,366원이 발생하고
567,319,22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30,815,737원임.

3) 채무결산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9,380,000,000	△3,038,000,000	0	3,038,000,000	36,342,000,000
일반회계	38,380,000,000	△3,038,000,000	0	3,038,000,000	35,342,000,000
기타회계 (수질개선)	1,000,000,000	0	0	0	1,000,000,000

○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9,380,000,000원에서 발생액은 0원이며,
3,038,000,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342,000,000원임.

4) 공유재산결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증감(△)
용도별	합 계	2,638,435,519,373	2,698,083,168,607	59,647,649,234
행정 재산	합 계	2,584,284,311,177	2,643,422,996,234	59,138,685,057
	공용 재산	308,293,791,182	323,222,671,742	14,928,880,560
	공공용재산	2,185,484,522,130	2,228,856,332,507	43,371,810,377
	기업용재산	90,483,296,865	91,321,290,985	837,994,120
	보존용재산	22,701,000	22,701,000	-
일반 재산		54,151,208,196	54,660,172,373	508,964,177

○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전년도말 2,638,435,519,373원에서
59,647,649,234원이 증가한 2,698,083,168,607원으로

- 토지 129,998,902㎡ / 550,186,537,142원
- 건물 214,739㎡ / 325,192,710,924원
- 기타 1,509,077건 / 1,822,703,920,541원임.

5) 물품결산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수량	879	477	272	205	181	5	176	1,175
금액	7,865,919	2,732,566	1,887,577	844,989	878,158	43,014	835,144	9,720,327

- 당해연도말 물품 현재액은 9,720,327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865,919천원 보다 1,854,408천원이 증가 하였음.

5.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계	947,601,281	71,430,365	7,832,075,928	7,760,645,563	1,019,031,646
보증금	296,798,000	△85,828,970	137,002,010	222,830,980	210,969,030
보관금	574,266,073	172,478,730	7,398,905,487	7,226,426,757	746,744,803
잡종금등기타	76,537,208	△15,219,395	296,168,431	311,387,826	61,317,813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19,031,646원으로
전년도말 947,601,281보다 71,430,365원이 증가함.
- ※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금액임.

6. 검사결과

□ 총 평

- 2017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7개 기타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5.96% 증가한 6,320억원 규모로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세입결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총6,55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6,499억원을 실제수납 하였음.
세출결산은 국토및지역개발, 문화및관광, 농림해양수산분야 등에 지출비율이 높았으며, 총5,054억원을 지출하여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평창군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76%로 전년도 1.91%보다 감소하였으며, 결산결과 실제수납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9.47%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자체재원 확충 및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등 11건의 금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17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개선·권고)사항 및 의견서

지적(개선·권고)사항 목록

번호	제 목	비고 (페이지)
1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15~16
2	기타특별회계 운영 준치 여부 검토	17~18
3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일소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9~20
4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소홀	21~22
5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사항 예산 미반영	23~24
6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조치 미흡	25~28
7	예산집행액 감소에 따른 후속 조치 미이행	29~30
8	이월예산 과다 발생	31~32
9	예산집행잔액 반납처리 지연	33
10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 미흡	34
11	공유재산과 재무제표 상 자산액 불일치	35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

○ 제 목 :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당해년도 세출을 충당하여야 함으로 세입추계는 치밀하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임.
- 2017년도 세입예산의 편성 실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58,298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많은 12,174백만원이 수납되어 570,472백만원으로 결산되었음
세입예산의 운용상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세입예산이 12,714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의 세입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익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지방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최근 수년간의 세입증가규모는 물론 부동산 및 경제동향 관련 데이터의 추계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임.

《최근3년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추이》

(단위:백만원)

과목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차액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차액	예산 현액	실 제 수납액	차액
합계	558,298	570,472	12,174	454,274	462,294	8,020	376,828	382,166	5,338
지방세수입	30,691	32,749	2,058	24,860	30,498	5,638	23,206	26,813	3,607
세외수입	17,114	21,284	4,170	19,866	24,669	4,803	10,538	14,645	4,107
지방교부세	234,397	238,303	3,906	180,909	183,424	2,515	162,872	165,850	2,978
조정교부금등	7,160	9,325	2,165	7,220	11,125	3,905	7,350	7,060	-290
보조금	156,582	155,995	-587	122,299	114,721	-7,578	111,426	105,712	-5,714
지방채	0	0	0	15,025	15,025	0	9,000	9,00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12,354	112,816	462	84,095	82,832	-1,263	52,436	53,086	650

□ 감사자 의견(개선사항)

-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 방법을 개선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이 과소 또는 과대 편성되어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람.
- 또한, 올바른 추계방법에 의거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의 증가되거나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 확보된 세원이 예산편성 없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2

○ 제 목 : 기타특별회계 운영 존치 여부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평창군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 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함.
- 그러나 기타특별회계 중 일부 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이 규모가 너무 작고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재원도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존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예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7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315,671,802원(세외수입 8,470,370원, 보전수입등 307,201,431원) 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551,000원(토지사용료 1건)에 불과 함

《결산상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비고
합 계	39,602,363	26,504,231	13,098,13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7,062	704,102	42,96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524,340	1,098,462	425,878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632,886	82,148	550,738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39,416	673,121	366,295	
수질개선특별회계	35,342,987	23,944,847	11,398,140	
주택사업특별회계	315,672	1,551	314,121	

□ 검사자 의견(권고사항)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반운영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과 함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3

○ 제 목 :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일소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의 체납액 관리는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납세 의무의 강화를 통해 납세회피를 방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됨.
- 평창군의 지방세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일정액 이상의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 경매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어 현행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개선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보임.

《연도별 체납액 규모》

(단위: 천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 고
2,463,740	2,334,720	2,458,236	2,328,862	2,238,311	

□ 검사자 의견(권고사항)

- 일정액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1차 독촉장 발부 시기부터 예의 주시하여 체납 시 즉시 압류 조치하여 채권의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재산압류, 공매, 경매 방법 이외에도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소액 체납건수가 3만 건을 웃돌고 있어 현재의 조직 시스템으로는 1년에 4회에 걸쳐 보내는 독촉장 이외에는 별다른 징수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다 다양한 체납액 관리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보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권고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4

○ 제 목 :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반영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에서 국, 도비 등 반납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반영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의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액이 불일치하게 반영하거나 세입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예산의 규모가 왜곡되고 예산반영 없는 자금이 세입으로 유입됨으로써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 년 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반 영 액	미반영액	비고
합 계	24,695,027	23,597,820	1,097,207	
일반회계	22,772,407	22,831,000	-58,59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653	49,653	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711,969	332,000	379,9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667	0	6,667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155,360	80,774	74,586	
수질개선특별회계	691,770	0	691,770	
주택사업특별회계	307,201	304,393	2,808	

□ 검사자 의견(개선사항)

- 향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시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기 바라며 가 결산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여 세입예산이 과소 또는 과대 반영되어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직원 자체 교육을 강화하여 결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시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5

○ 제 목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사항 예산 미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보조 내시 및 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금액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2017년도 예산 회계년도의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이는 허수의 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을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착금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음.

《2017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예산 미반영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편성액			보조금 착금액			변경사항 미반영금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8,342	18,342		16,248	16,248		2,094	2,094	
누리과정 보육료	1,563,707		1,563,707	1,524,327		1,524,327	39,380		39,380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4,000		4,000	2,400		2,400	1,600		1,600
재해위험지역정비 (횡계지구)	3,465,600	2,888,000	577,600	3,466,000	2,888,000	578,000	(400)		(400)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82,000	250,000	32,000	167,000	135,000	32,000	115,000	115,000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542,892		542,892	518,554		518,554	24,338		24,338

사 업 명	예산편성액			보조금 착금액			변경사항 미반영금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광견병 예방관리 등	41,250		41,250	41,270		41,270	(20)		(20)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0,400		20,400	18,000		18,000	2,400		2,400
과수분야 스마트 팜 확산사업	50,700	39,000	11,700	8,060	6,200	1,860	42,640	32,800	9,840
농식품수출자조금 조성	14,640		14,640	-	-	-	14,640		14,640
친환경농업직불금	90,000	90,000		40,000	40,000		50,000	50,000	
농업재해지원금	11,883	6,513	5,370	5,370		5,370	6,513	6,513	-

□ 검사자 의견(개선사항)

-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착금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착금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허수의 예산이 존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특히 착금된 자금보다 초과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6

○ 제 목 :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잔액은 15,114백만원이며 전년도에는 12,7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1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임.
-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지출 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은 32개 세부사업에 967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100%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합계		32개사업		967,422
1	기획감사실	평창이야기(소식지) 운영	301-11	3,600
2	문화관광과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보조)	201-01	70,000
3	문화관광과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201-02	3,150
4	문화관광과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지원(보조)	307-02	50,000
5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정비	401-01	27,000
6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정비(도비)	401-01	140,000
7	문화관광과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보조)	201-02	6,000
8	주민생활지원과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도비)	301-01	100
9	주민생활지원과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보조)	301-01	300
10	주민생활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보조)	301-01	900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11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보조)	301-01	2,000
12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보조)	301-01	748
13	주민생활지원과	어린이집 확충(보조)	405-01	10,000
14	주민생활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보조)	301-01	120
15	주민생활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보조)	301-01	714
16	자치행정과	창안제도 운영	303-01	5,000
17	환경위생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201-02	500
18	환경위생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101-04	11,440
19	환경위생과	HACCP 인증지원(컨설팅비용)(보조)	307-02	11,200
20	산림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보조)	402-02	32,000
21	도시주택과	택시운송사업자 재정지원	307-09	8,540
22	올림픽추진단	자원봉사자 운영(도비)	401-01	30,000
23	보건의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405-01	500
24	보건의료원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207-02	22,000
25	보건의료원	치매관리 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07-01	100,230
26	보건의료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도비)	201-01	1,000
27	농업기술센터	우수농산물 운영(보조)	307-02	99,000
28	농업기술센터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보조)	402-02	300,000
29	농업기술센터	조사료생산용초지보완(보조)	402-02	23,380
30	농업기술센터	약초육성 전략사업	301-09	2,000
31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산품목 육성	201-03	5,000
32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보조)	501-01	1,000

- 예산액 대비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업 사업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잔액	사유
합계	39개사업	6,671,649	2,820,655	
기획감사실(3)	국제화여비	60,000	47,595	외국인 미초청
	국내여비	55,000	29,814	예산절감
	연구용역비	50,000	23,900	예산절감
문화관광과	자산취득비	100,000	32,702	예산절감
	지방문화원 시설비	950,000	89,640	낙찰잔액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잔액	사유
문화관광과 (5)	문화유적지 정비	330,000	102,849	강릉시에서 사업주관
	국가지정문화재	380,000	103,430	월정사 잔액
	국가지정문화재	388,046	199,488	월정사 잔액
주민생활지원과 (3)	사회복지시설중사법정운영비	246,000	64,065	집행잔액
	결식아동지원	177,200	76,651	집행잔액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213,624	46,576	집행잔액
종합민원과(2)	지적공부 연구용역비	94,956	53,056	집행잔액
	지적공부전산무기계약직보수	24,138	18,671	대상자 출산휴가
경제체육과(3)	청년일자리 민간보조	60,000	42,179	취업자 부족
	강원일자치 특별지원	222,300	114,600	기업체 구직자 부족
	강원일자치 특별지원	742,200	576,600	기업체 구직자 부족
환경위생과(3)	지하수관리	122,041	40,800	집행잔액
	탄소포인트	30,000	25,875	대상자 신청부족
	외국인 반정서 음식 간판	90,000	70,000	사업포기
산림과(2)	산불기간제근로자 보수	254,000	104,716	일자리지원(도비)
	산림재해위험지복구	50,000	40,240	예비비
안전건설과(1)	도로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	383,404	183,067	집행잔액
도시주택과(2)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82,000	47,680	초기홍보부족
	농촌지역 희망택시	262,000	51,764	집행잔액
보건의료원(4)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124,400	31,862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150,940	54,500	출생아 저조
	결핵관리사업	30,386	15,419	대상자 없음
	산후돌봄지원	53,860	21,673	출생아저조, 6월시작
농업기술센터 (10)	농업안전보험	40,000	34,003	농협부담금 미확보
	농산물직거래활성화	30,000	13,496	대상자 포기
	고품질식량작물생산유통	25,000	16,554	대상자 포기
	귀농인 지원사업	88,800	33,100	지원대상자 부족
	과수분야 스마트팜	97,500	82,000	농가사업포기
	특용작물시설현대화	75,000	34,014	농가사업포기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200,334	133,998	농가사업포기
	고랭지 인삼육성	131,500	42,203	집행잔액
	친환경농업 직불제	90,000	52,420	대상자 부족
	시설영농운영시험연구비	60,000	33,871	집행잔액
상하수도사업소(1)	상수도보호구역정비	107,020	35,584	집행잔액

□ 검사자 의견(개선사항)

- 상기 집행 잔액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공기부족, 보상지연, 사업 대상자 포기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음.
-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적기에 예산집행의 태만, 추경 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을 제외한 기타의 집행 잔액은 필요한 예산 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함으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예산 배정기관 등에 대한 설득력 강화 등을 통한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계획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 거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국비교부에 있어 군비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면 국비 예산 책정 시에 관련 군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7

○ 제 목 : 예산집행액 감소에 따른 후속 조치 미 이행

○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평창군 농촌지역 특성상 사업의 축소 및 포기가 예상됨에도 관행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국.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추진으로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결산 시점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예산운영의 어려움과 자금을 사장하였고 일부 읍면에서는 최종 추경예산 시 감액 요청하였음에도 반영하지 않았음.
-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함에도 다음년도 예산을 증액시키고 집행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 사업	2017년도			2018년도 본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11건	2,564,915	1,589,138	975,777	1,930,933
경제체육과	강원일자리특별지원	742,200	165,600	576,600	0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	30,000	4,125	25,875	24,000
산림과	산불기간제근로자보수	254,400	149,284	105,116	292,800
도시주택과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82,000	34,320	47,680	155,800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지원사업 (기타보상금)	88,800	55,700	33,100	61,880
농업기술센터	시설영농운영 (시험연구비)	60,000	26,129	33,871	60,000

부서명	세부 사업	2017년도			2018년도 본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평창읍	환경미화원 인건비	381,256	363,334	17,922	398,473
대화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193,833	167,316	26,517	189,436
봉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236,722	204,536	32,186	248,655
용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149,254	124,944	24,310	155,955
진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346,450	293,850	52,600	343,934

□ 검사자 의견(개선사항)

- 미 집행이유가 발생한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이월조치 등 최종 추경 예산시 정리를 통하여 계상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여 전년도 집행내역 등을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검토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발생한 재원을 다른 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실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8

○ 제 목 : 이월예산 과다 발생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50조(예산의이월) 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 감사자 의견(개선사항)

- 이는 사업 규모의 대형화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바람.

《이월사업현황(일반+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9	91,402,152	195	116,569,845	255	102,446,115
명시이월	153	43,947,671	136	55,052,350	168	47,298,075
사고이월	38	4,448,119	24	5,862,746	53	6,427,549
계속비이월	28	43,006,362	35	55,654,749	34	48,720,491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건수	이 월 액				비고
		계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55	102,446,115	47,298,075	6,427,549	48,720,491	
기획감사실	1	96,970		96,970		
문화관광과	49	21,011,831	8,969,695	1,834,083	10,208,053	
주민생활지원과	6	1,216,292	1,216,292			
종합민원과	3	65,552	65,552			
자치행정과	5	1,547,123	1,547,123			
재무과	2	153,272	108,900	44,372		
경제체육과	23	3,374,888	3,039,206	335,682		
환경위생과	18	9,954,901	3,670,876	735,455	5,548,570	
산림과	6	297,344	99,684	197,660		
안전건설과	39	23,057,906	7,647,893	404,747	15,005,266	
도시주택과	15	7,987,514	6,827,064	214,569	945,881	
올림픽추진단	8	1,090,249	1,090,249			
올림픽운영과	18	5,357,160	4,309,587	1,047,573		
올림픽시설과	13	14,311,861	1,053,682		13,258,179	
보건의료원	8	6,085,377	2,330,835		3,754,542	
농업기술센터	36	6,600,167	5,105,696	1,494,471		
상하수도사업소	5	237,708	215,741	21,967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9

○ 제 목 : 예산집행잔액 반납처리 지연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반납금내역	반납액	반납일자	지연일수
합 계	3건	487,700		
자치행정과	일상경비집행잔액(당직비)	450,000	2018.1.24	4일
보건의료원	관외출장여비	30,000	2018.3.14	53일
보건의료원	승강비통화장치통신료	7,700	2018.3.14	53일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 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 ” 일상경비는 다음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자치행정과 일상경비 집행잔액 450,000원은 반납기한 1.20보다 4일, 보건의료원 반납금 37,700원은 53일이 경과된 후 지출잔액을 반납하였음.

□ 검사자 의견(개선사항)

- 일상경비 지출잔액 또는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출납폐쇄 후 반납기한 1.20일 까지 반납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0

○ 제 목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 미흡

○ 문제점

-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시 사업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162,580,78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음.

(단위 : 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통시장 활성화(도비) 401-01	1,140,000,000	99,061,020	790,000,000	88,358,200	162,580,780

□ 검사자 의견(개선사항)

- 이월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잔액 발생 예상시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적사항

○ 관리번호 : 11

○ 제 목 : 공유재산과 재무제표 상 자산액 불일치

○ 문제점

-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결산서 첨부서류인 공유재산 보고서의 토지재산 현재액과 재무제표상 토지자산액이 불일치하고 입목재산의 경우 공유재산보고서에는 증가액이 없으나 재무제표에는 증가액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재무제표 관리 부서간 상호 자료입력 대조 등 상호 연계 체제가 미흡함

(토지재산)

(금액:천원)

공유재산 현재액	재무제표 자산액	차액
550,186,537	545,757,018	4,429,519

(입목재산)

(금액:천원)

공유재산		재무제표		차액
증가액	현재액	증가액	자산액	
331,805	9,737,731	15,816	1,999,106	7,738,625

□ 감사자 의견(개선사항)

-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회계부서의 복식부기담당의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과 공유재산부서 재산관리담당의 새울(공유재산)행정 시스템간 향후, 토지, 건물 등 자산취득, 매각시 일치된 금액입력과 매년 자산의 감가상각 반영으로 평창군의 자산 총계가 상호 일치되도록 조치 바람.